

실험실습실 운영규정

제정 : 2011.05.0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이하함) 실험실습실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1.11.22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과의 실험실습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.

제3조(운영과 책임) ① 본 대학교의 실험실습실 책임자는 학과장이며 담당교수가 실습실 별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학과장과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진다.

1. 실험실습기자재(집기비품)의 안전한 보관 및 보전, 도난, 파손 등의 책임관리
2. 실험실습기자재, 집기비품, 실습재료 구입, 수리 관련 청구서 작성
3. 공동 기자재 운영에 관한 책임 관리
4. 실험실습에 사용된 기자재, 재료의 정리정돈 및 보관
5. 고가 기자재 사용대장, 실험실습 재료의 수불대장 정리 <개정 2021.12.01.>
6. 실험실습 보안(도난, 화재, 안전사고 예방 등)에 관한 사항
7. 실습실별 안전수칙 작성 비치

제4조(실험실습) ① 학과의 실험실습은 교무처에 제출한 실험·실습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한다.<개정 2014.07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실험실습 소모품 관리대장의 전년도 재고는 신년도 관리대장에 이월하여 관리·사용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실험실습 소모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소모품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처 사무팀에서 점검 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.<개정 2014.07.01., 2022.10.01.>

④ 고가 기자재(500만원 이상) 사용 시에 반드시 기자재 사용대장에 기록하며 사용 대장의 점검은 학기별 학과 기자재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5조(실습기자재) ① 실험실습 기자재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.<개정 2014.07.01., 2021.12. 01., 2022.10.01.>

- ② 학과장 및 담당교수는 기자재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실습 기자재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.
- ③ 고가의 기자재 활용 시 반드시 고가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용한다.
- ④ 실습 기자재의 고장이 발생 하였을 시 물품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수리하고 분실, 파손이 발생 시 즉시 사무처 사무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1개월 이내에 변상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>

제6조(안전관리) ① 실험 실습실에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실험 실습실내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>
 - 1. 실습의 종료 및 기자재의 사용 후 전원은 반드시 차단
 - 2. 실험 실습실 내에서 절대 금연
 - 3. 수업 종료 후 퇴실 시 시건장치 확인 한다.
 - 4. 기타 화재 및 도난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
- ③ 학과 교수는 실습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학생준수사항) ① 실험실습실 내에서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어떠한 장비도 작동시킬 수 없다.

- ② 기자재의 작동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- ③ 실험실습 중 학생의 부주의 혹은 고의로 기자재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학생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④ 실습 종료 후 기자재는 정비하여 반납하며 실습실 청결상태를 담당교수에게 확인 후 퇴실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